

# 숙종인현왕후 가례 복식의 특징 및 의미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문화연구실 선임연구원, 한국복식사 전공

[mjlee815@aks.ac.kr](mailto:mjlee815@aks.ac.kr)

I. 머리말

II. 가례 절차에 따른 의례별 · 신분별 복식

III. 반차도 속 신분별 복식의 특징

IV. 맷음말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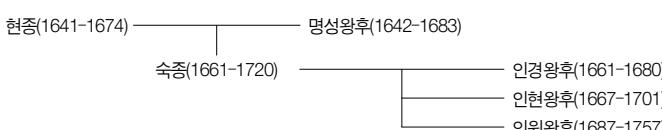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이하 『가례도감의궤』)와 『(인현왕후)왕비가례등록』(이하 『왕비가례등록』)을 통해 왕비 가례 절차에 따른 의례별·신분별 복식을 살펴봄으로써 숙종인현왕후가례 복식의 특징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sup>1)</sup>

숙종은 1671년(현종 12) 왕세자 신분으로 첫 번째 가례를 치렀으며, 1681년(숙종 7) 국왕의 신분으로 인현왕후와 두 번째 가례를 치렀다.<sup>2)</sup> 숙종의 첫 번째 가례는 왕세자 신분으로서의 가례였으므로 아버지인 현종이 가례의 주재자였다. 그러나 두 번째 가례인 이 의례는 숙종 자신이 주재자인 동시에 주인공으로서 왕비를 맞이한 첫 번째 가례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sup>3)</sup>

숙종인현왕후 가례에 대한 기록은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이다. 의궤는 어람용을 포함해서 예조, 강화부,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에 보관할 목적으로 총 6건을 작성하였는데, 이 『가례도감의궤』는 적상산성 소장본이다.<sup>4)</sup> 의궤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례지침서로서, 앞 시기의 의궤를 참고하여 중요한 국가행사를 보다 원만하게 치르도록

1) 이 글은 2016년도 장서각자료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서양 기록문화의 과거와 현재』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장서각자료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밝힌다.

2) 숙종은 총 세 번의 가례를 치렀으며, 첫 번째는 인경왕후이며 세 번째는 인원왕후 김씨이다. 숙종의 가계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한국사연구』 140(한국사연구회, 2008), 153-181쪽;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별궁 친영례”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조선시대사학회, 2010) 81-125쪽; 이미선,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 고찰: 장서각 소장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장서각』 14(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35-172쪽;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 숙종, 인현왕후 가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권(조선시대사학회, 2007), 79-139쪽; 윤혜민, 「조선 전기 계비 선정 방식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조선시대사학회, 2013), 55-95쪽.

4) 『가례도감의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590.

본보기로 기록해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는 전 시기의 의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등록은 실제 의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주고받은 각 관서간의 기록을 모아놓은 문서철이다. 따라서 실제 의례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의례보다 오히려 등록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종인현왕후 가례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왕비가례등록』일 것이다.

또한 이 가례를 치르는 데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가례 절차와 1651년(효종 2) 현종과 명성왕후의 가례를 비롯하여 1671년(현종 12) 숙종과 인경왕후의 가례를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전교를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1651년과 1671년의 가례는 왕세자의 가례였으므로 실제 저본으로 활용한 것은 1638년에 거행된 인조장렬왕후의 가례였다. 이는 인조장렬왕후 가례가 왕비가례이면서 계비(繼妃)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행된 가례였기 때문이다.

숙종의 가례는 1680년(숙종 6)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경덕궁에서 승하하자 상을 마치기도 전에 계비 간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sup>5)</sup>, 바로 다음 해인 1681년 1월 3일 새 중전을 간택하라는 왕대비의 하교가 내려졌다.<sup>6)</sup> 인현왕후 가례 이전까지는 왕비가 승하하면 삼년상을 마친 후 책비의 절차를 통해 정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가례에서는 국왕에게 국본이 없다는 이유로 상을 마치기도 전에 왕비 간택에 대한 하교를 내렸고 대신들은 “국본이 없다면 먼저 숙의를 뽑고 기년(賛年) 후에 육례를 갖추어 명가에서 좋은 배필을 뽑아 왕비의 정위(正位)를 정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대비뿐 아니라 대왕대비까지 후사가 없으면 왕비를 책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하교를 내림에 따라 졸곡(卒哭)을 마친 후 바로 초간택을 하고<sup>7)</sup>, 마침내 1681년(숙종 7) 3월 26일 삼간택을 거쳐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였다.<sup>8)</sup>

뿐만 아니라 이 가례의 특징은 비씨(妃氏)의 집에서 거행되었던 수납채

5) 『숙종실록』, 숙종 6년 10월 26일(신해).

6) 『숙종실록』, 숙종 7년 1월 3일(정사).

7) 『숙종실록』, 숙종 7년 1월 4일(무오).

8) 『숙종실록』, 숙종 7년 3월 26일(기묘).

의, 수납정의, 수고기의 의례를 별궁으로 바꾸고, 동뢰의를 치르기 위해 궁궐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그린 예궐반차도의 면수가 8면(인조장렬왕후 가례반차도)에서 19면<sup>9)</sup>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반차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그에 따른 복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7세기 왕비가례의 전형을 마련한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이 의례의 저본이 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sup>10)</sup>를 비교·검토하면서 가례 절차에 따른 의례별·신분별 복식을 통해 숙종인현왕후 가례 복식의 특징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례 절차에 따른 의례별·신분별 복식

왕실가례의 절차는 납채의(納采儀), 납정의(納徵儀), 고기의(告期儀), 책비의(冊妃儀), 친영의(親迎儀), 동뢰의(同牢儀) 등 육례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혼의 시작은 전국에 내려지는 금혼령(禁婚令)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과 삼간택을 치른 후 최종 간택자가 별궁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예비의례’로 보고, 납채(納采)에서 동뢰(同牢)까지의 육례를 ‘본의례’라 하며, 대왕대비와 왕대비에게 인사를 드리는 조현례 및 묘현례까지를 ‘후속의례’로 보고 각 의례별·신분별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묘현례는 1703년(숙종 29)에 처음으로 행해진 의례이므로 이 의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 1. 예비의례

일반적으로 의궤자료에서는 예비의례의 전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등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9) 장서각에 소장된 적상산본 반차도는 19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백산에 소장되어 있던 규장각본은 1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는 현전하는 왕비가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왕비의 가례 시 복식이 수록되어 있는 유일본이면서, 숙종인현왕후 가례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행된 왕비가례이다.

있다. 그러나 이 의궤에서는 삼간택을 빨리 치르고자 하는 타당성과 함께 예비의례 중 별궁의 처소를 정하는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별궁의 처소는 전교에 따라 1602년(선조 35, 임인년)과 1638년(인조 16, 무인년)의 가례를 참고하였는데, 이는 두 가례 모두 후궁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왕비를 간택한 전례(前例)에 해당하므로 인현왕후 가례를 치르는 데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간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왕비가례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삼간택

왕실의 간택은 모두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가례도감의궤』<sup>11)</sup>와 『왕비등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왕대비는 왕비의 빈자리를 빨리 채우기 위해 언서(諺書)로 금혼령을 내릴 것을 하교하였다. 금혼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여염에서 잇달아 혼인을 하고, 심지어 합당한 나이의 처자임에도 단자를 들이지 않는 폐단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졸곡 후에 바로 초간택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sup>12)</sup>

그러나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다. 영중추부사 송시열을 비롯하여 좌의정 민정중, 우의정 이상진, 예조판서 이단하 등은 저사(儲嗣)를 넓히고자 한다면 먼저 숙의를 뽑고 다시 기년(朞年) 후에 육례를 갖추어 명가에서 좋은 배필을 뽑아 왕비의 정위를 정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오례의』에는 국흘의 졸곡 전에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나 임금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겠으니 자성전하에게 계품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하교를 내렸다.

이에 자성전하는 국본이 없고 곤위가 오랫동안 비는 것을 더욱 염려하여 비망을 내린 것이라고 하며 간택을 서두르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신하들도 저사가 없다는 것이 절박한 근심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경을 폐하고 권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sup>13)</sup>

11) 일반적으로 『가례도감의궤』에는 예조별단의 내용이 가장 먼저 수록되는 것에 반해 이 『가례도감의궤』는 삼간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왕대비가 졸곡 전에 금혼령을 내리고자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숙종실록』, 숙종 7년 1월 3일(정사).

결국 가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검소함을 따르되 시일을 끌지 않도록 했다. 다만 출곡 전에 단자를 거두는 것은 사체상 미안할 뿐만 아니라 정리(情理)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단자를 경중(京中)에서만 받아들여 간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초간택은 3월 12일 부호군 조지겸(趙持謙)의 딸을 비롯해 17명이 참여했다. 그중에서 재간택에 뽑힌 처자는 병조판서 민유중(閔維重)의 딸과 전 승지 최석정(崔錫鼎)의 딸, 유학 홍택보(洪澤普)의 딸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인을 허락하였다.<sup>14)</sup> 그리고 3월 18일 재간택 때에는 이들 3명과 함께 초간택 때 참가하지 못했던 처자 부호군 박세채의 딸, 이천부사 심의선의 딸이 입궐하였다.<sup>15)</sup> 이때에도 민유중, 최석정, 홍택보의 딸은 금혼시키고 나머지는 혼인을 허락하였다. 삼간택은 3월 26일 대내에서 거행하였으며 대비전께서 대혼(大婚)을 병조판서 민유중의 집으로 정하고 여러 대신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을 비롯한 대신들은 “자교(慈教)를 받들건대, 진실로 신인(神人)의 소망에 맞으니 이는 오나라 신민의 복입니다. 신 등은 기뻐서 하례하는 바가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sup>16)</sup> 이로써 최종적으로 민유중의 딸이 계비로 정해졌다. 이때 『왕비가례등록』이나 『가례도감의궤』에는 간택처자들의 복식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2) 별궁

별궁은 원래 친영례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장소이다. 친영은 국왕이 배필을 중시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왕비를 직접 가서 모셔 오는 의례이다. 조선 초에는 사신을 보내 신부를 모셔 오는 명사봉영(命使奉迎)의 의례를 거행하다가 친영제도로 바뀐 것은 중종 때이다. 중종은 왕비만큼은 함께 종묘와 사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례로 삼았다.<sup>17)</sup>

13) 『숙종실록』, 숙종 7년 1월 4일(무오).

14) 『왕비가례등록』, 初揀擇許婚,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 『왕비가례등록』, 單子追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6) 『왕비가례등록』, 定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7) 임민혁, 「조선시대 『등록』을 통해 본 왕비의 친영과 권위」, 『한국사학사학보』 25 (2011), 119쪽.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친영의 장소는 육례의 절차에 따라 왕비의 집에서 거행하는 것이 규례였다.<sup>18)</sup> 그러나 왕비의 집이 궁궐에서 멀리 있을 경우 의례를 거행하기가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중종부터 명종, 선조, 광해군에 이어 1627년(인조 5)까지 태평관을 친영례 장소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별궁을 관소로 정한 것은 친영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신묘년과 신해년 왕세자 가례를 치르면서 태평관이 아닌 어의 궁<sup>20)</sup>을 별궁으로 정하고 친영례를 거행하였다.<sup>21)</sup> 숙종인현왕후 별궁처 소는 3월 12일 초간택이 치러질 때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조장렬왕후 가례 등록에는 친영례의 장소가 구례(舊例)에는 태평관이었으나 수리를 해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교에 따라 어의궁에서 거행한 전례가 있다고 하자 이번에도 어의궁에서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교가 내려졌다.<sup>22)</sup>

따라서 3월 26일 삼간택에서 최종간택이 된 민유중의 딸은 곧바로 어의궁으로 거처를 옮겼다.<sup>23)</sup> 이후 동뢰연을 치르기 위해 궁궐로 들어갈 때까지 어의궁에서 왕실의 법도를 익히며 친영일까지 거처하였다. 이때에도 『왕비가례등록』이나 『가례도감의궤』에는 예비 왕비의 복식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2. 본의례

‘본의례’는 삼간택이 끝난 후 납채에서 동뢰까지의 절차이다. 왕비의 가례 절차는 『왕비가례등록』과 『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조오례의』와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를 저본으로 삼아 의례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의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문에 의거하여 본가에서 설행되

18) 『국조오례의』 가례, 친영.

19) 『인조실록』, 인조 16년 10월 10일(기해).

20) 신묘년은 1651년 효종과 명성왕후의 가례를 거행한 해이며, 신해년은 1671년 숙종과 인경왕후가 가례를 올린 해이다. 이때 별궁을 어의궁으로 정하고 친영 장소로 삼았다.

21) 『가례도감의궤』, 신유년 3월 11일, 도감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

22) 『왕비가례등록』, 親迎處所稟,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3) 『숙종실록』, 숙종 7년 4월 13일(병신).

던 납채의, 납징의, 고기의를 별궁에서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책비례와 친영례는 태평관이 아닌 별궁에서 거행하였으며<sup>24)</sup>, 동례의는 궁궐에 들어와 거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육례의 절차에 따라 의식을 거행하는 공간이 왜 달라졌으며, 참여자들의 복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특히 이 가례의 하이라이트인 친영례의 의식 절차를 통해 본의례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납채의

납채의는 납채의와 수납채의로 구성된다. 납채의는 왕실에서 혼인의 뜻을 전하는 의식이며, 수납채의는 비씨(妃氏)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의식이다. 이 가례의 납채의는 1681년(숙종 7, 신유년) 4월 13일 사시에 거행되었다. 『가례도감의궤』 의주질에는 “전하는 면복을 갖추고 인정전에 납시며 종친문무백관과 사자 이하는 모두 조복을 갖추고 조당에 모인다. 이때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전정의 뜰에서 호위하는 관원 및 사금은 각기 그 복을 갖춘다. 왕비집에서 납채를 받을 때에는 빈주 및 행사자는 모두 공복을 갖춘다”고 기록하였다.<sup>25)</sup> 이는 『왕비가례등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sup>26)</sup>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실제 납채의 뜻을 전하려 가는 정사와 부사의 경우에는 조복을 입고 있다가 납채의가 끝나면 궁궐 밖으로 나와 공복으로 갈아입고 비씨 집에 가서 수납채의를 거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납채의 비씨의 집을 어의동 홍정승 중보(重普)의 집으로 옮겨 이곳을 별궁으로 삼았으며<sup>27)</sup>, 정사인 영의정 김수항과 부사인 병조판서 이숙을 어의동 별궁으로 보내어 납채례를 거행하도록 했다.<sup>28)</sup>

악대인 헌현(軒懸)을 펼치고 노부반장, 채여, 전도고취, 세장, 금도부장, 인로군사 등 모든 일은 병조와 장악원으로 하여금 예에 비추어 거행하게 하고 도감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24) 『왕비가례등록』, 육례행례처소.

25) 『가례도감의궤』, 의주질.

26) 『왕비가례등록』, 신유 3월 28일.

27) 『왕비가례등록』, 納采正日行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8) 『숙종실록』, 숙종 7년 4월 13일(병신).

## 2) 납징의

납징의는 납징의와 수납징의로 구성된다. 납징의는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보내는 예물이다. 이 가례의 납징의는 4월 20일 오시에 거행되었다. 『가례도감의궤』 의주질에는 “전하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갖추고 인정전에 납시며 종친과 문무백관 중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이하는 흑단령을 입고 행례한다”고 하였다. 납징례도 사자 이하는 궐문 밖으로 나가 공복으로 갈아입고 비씨 집에서 수납징의를 한다고 했다.<sup>29)</sup> 그러나 실제로는 납징례 역시 어의동 별궁으로 정사와 부사를 보내 거행하였다.<sup>30)</sup> 납징의도 납채의의 의식과 같되 정부사 이하 집사와 주인, 빈자가 쟁용해야 하는 공복은 도감에서 갖추었다. 이는 1638년(인조 16) 가례 때 예조에서 아뢴 바에 의한 것이다.

육례(六禮)를 치를 때 상의 관복(冠服)은 마땅히 예문대로 하지만 백관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집사는 흑 공복(公服)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조복과 공복을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정사, 부사, 주인, 빈자의 공복은 도감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집사들은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sup>31)</sup>

이러한 규정은 1671년(현종 12) 숙종이 왕세자 시절 치른 가례에도 적용되어 납채와 납징 등의 예를 행할 때 정사, 부사, 주인, 빈자의 공복은 도감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집사들은 모두 흑단령을 입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32)</sup>

## 3) 고기의

고기의는 고기의와 수고기의로 구성된다. 고기의는 혼인 날짜를 비씨 집에 알려주는 의식이다. 이 가례의 고기의는 4월 25일 사시에 거행하였다. 『가례도감의궤』 의주질에는 “전하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고 내전에 납시며 산선시위는 평상시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비가례등록』에는 납채와 고기일에 전하는 면복을 갖춘다고 함으로써 두 기록에 차이가 있다. 『국조오례의』 납비의와 납빈의에는 전하의 복식에 대한 내용은

29) 『가례도감의궤』, 의주질 및 『왕비가례등록』, 신유 3월 28일.

30) 『숙종실록』, 숙종 7년 4월 20일(계묘).

31) 『인조실록』, 인조 16년 10월 9일(무술).

32) 『현종개수실록』, 현종 12년 2월 17일(기해).

없고 다만 사자에게 명하여 납채의와 같이 하게 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이후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고기의에서는 “전하는 면복을 갖추고 내전에 입어한다”고 하였으며, 철종 가례 때에는 『승정원 일기』에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하고 옥대와 적석을 신고 여를 타고 선화문을 나온다고 하였으나<sup>33)</sup> 『(철인황후)왕비가례등록』에는 면복을 입고 내전에 납신다고 하였으므로 실록과 『의궤』, 『등록』, 『승정원일기』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 4) 책비의

책비의도 책비의와 수책비의로 구성된다. 책비의는 가례를 치르기에 앞서 국왕과 동등한 신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이다. 책비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비의 위의와 권위를 담보하는 교명, 옥책, 금보, 명복을 전달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이때 며칠 전부터 지진의 변괴가 여러 날 동안 거듭 일어났기 때문에 책비례를 늦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길일이 멀다는 이유로 5월 초 2일 사시에 그대로 거행하였다.<sup>34)</sup>

책비의에 “전하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고 인정전에 납시었으며 종친과 문무백관 중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사자 이하는 조복을 갖추고 행례한다”<sup>35)</sup>고 하였으므로 사자 이하 집사자의 복식이 공복에서 조복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수책의를 할 때 왕비는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더하며, 빈주(賓主)와 행사자는 모두 조복을 입고, 내시는 상복인 흑단령을 입는다.

#### 5) 친영의

친영의는 왕비를 맞이해 오는 의식이다. 5월 13일 사시에 어의동 별궁에서 거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왕비의 친영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517년(중종 12)이다. 이때 임금은 면복을 갖추고 태평관에서 친영례를 거행했다.<sup>36)</sup>

33) 『승정원일기』, 철종 2년 9월 24일(병자).

34) 『숙종실록』, 숙종 7년 5월 2일(갑인).

35) 『왕비가례등록』, 신유년 3월 28일.

친영례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이 친영제도에 대해 문자, 김종서는 우리나라에는 원래 친영제도가 없었다고 하며 그 이유로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하여 임금은 친영의 예법이 갑작스럽게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sup>37)</sup> 이후 왕자와 공주부터 친영례를 거행하기로 했으나 실제 왕비의 친영례는 중종 때 이르러서야 시행되었다.

이후 1602년(선조 35) 선조는 태평관에서 친영례를 거행하였다.<sup>38)</sup> 그러나 1638년(인조 16)에는 태평관을 수리하는 데 폐단이 있음을 우려하여 모두 별궁에서 거행하였으며<sup>39)</sup>, 이때의 예를 전기로 1681년(숙종 7) 인현왕후 가례에도 친영의 처소를 어의동의 별궁으로 정했다.<sup>40)</sup>

흔례의 하이라이트는 친영과 동뢰이다. 『가례도감의궤』 친영례를 중심으로 그 절차와 각 신분별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영의를 하는 날 전하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왕비의 대문 밖에 이른다.
- 주인은 조복을 갖추고 나와 길 왼쪽에 서서 국궁하고 맞이한다.
- 대가가 중문 밖 대차 앞에 이르면 좌통례가 부복, 궐하고 ‘규를 풀 것’<sup>41)</sup>을 계청한다.
- 전하가 규를 풀면 근시가 무릎을 끊고 규를 받는다.
- 좌통례가 무릎을 끊고 연에서 내리실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연에서 내리면 좌우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대차 안으로 들어가신다.
- 행례할 때가 되면 좌통례가 ‘부복, 궐하고 차에서 나오실 것’을 계청한다.
- 좌통례가 무릎을 끊고 ‘규를 잡으실 것’을 계청하면 근시가 규를 올린다.
- 전하가 규를 잡으면 좌우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들어간다.(통례 및 시위관은 문 밖에 머무른다.)
- 주인이 인도하여 전하가 안으로 들어간다.
- 장축자가 기려기를 상전에게 준다.
- 상전이 전하여 받들고 문안에 이르러 상궁에게 전하여 준다.

36) 『중종실록』,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37) 『세종실록』, 세종 16년 4월 12일(기미).

38) 『선조실록』, 선조 35년 7월 13일(임신).

39) 『인조실록』, 인조 16년 12월 3일(신묘).

40) 『숙종실록』, 숙종 7년 3월 11일(갑자).

41) 규를 풀다(釋)는 것은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양손에 맞잡고 있던 규를 근시에게 주기 위해 잡고 있던 규를 근시에게 주는 행위이다.

- 전하가 정계(正階)를 거쳐 정청에 올라 동벽 육위의 남쪽 끝에 이른다.
- 부모(傅姆)가 '나오라'고 찬한다.
-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방에서 나온다.(집촉자가 앞에 간다.) 서벽에 있는 육 위의 남쪽 끝에 이른다.
- 전하가 읍한다.
- 왕비는 자리로 나아간다.
- 전하와 왕비가 조금 물러나 각각 육위 위로 나아간다.
- 주인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전하의 뒤에 약간 물러나 선다.
- 주모는 예의(禮衣)를 갖추고 왕비의 뒤에 약간 물러나 선다.
- 상궁이 기러기를 받들고 무릎을 끊고 전하의 오른쪽에서 올린다.
- 상궁이 무릎을 끊고 '규를 풀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규를 훈다.
- 여관이 무릎을 끊고 규를 받는다.
- 상궁이 무릎을 끊고 '전안례를 행할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기러기를 받아서 북벽에 있는 상위에 올린다.
- 상궁이 무릎을 끊고 '규를 잡을 것'을 계청한다.
- 여관이 무릎을 끊고 규를 올리면 전하가 규를 잡는다.
- 주인이 내려가 아래 북향하여 선다.
-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면 조금 물러나 남향하여 선다.
- 주인이 사배한다.
- 사배를 마치면 상궁이 무릎을 끊고 '예를 마쳤음'을 아뢴다.(주모가 기러기 상을 철수한다.)
-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 안으로 들어간다.
- 주인이 동계에 오른다.
-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오면 서계 위에 이른다. 부모(傅姆)가 왼쪽에 있고 보모(保母)는 뒤에 있다.
- 주인이 조금 나아가 서향하고 경계의 말을 한다. "조심하고 공경하여 낮이나 밤이나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고 주인은 물러나 서향하여 선다.
- 주모가 왕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서서 옷깃을 여미주고 수건을 묶어주면서 경계하여 말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낮이나 밤이나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명한다.
- 왕비가 듣기를 마치면 궁인이 여로 나아간다.
- 상의가 무릎을 끊고 '여에 오르실 것'을 계청한다.
- 왕비가 여에 오르면 잠시 멈춘다.
- 상의가 무릎을 끊고 '차에서 나오실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차에서 나와 읍한다.
- 왕비가 연에 이른다.
- 전하가 먼저 중문 밖으로 나아가면 좌통례가 무릎을 끊고 '규를 풀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규를 풀면 근시가 무릎을 끊고 규를 받는다.

- 좌통례가 무릎을 끓고 ‘연에 오르실 것’을 계청한다.
- 전하가 연에 오른다.
- 좌통례가 무릎을 끓고 ‘규를 잡으실 것’을 계청한다.
- 근시가 무릎을 끓고 규를 올린다.
- 전하가 규를 잡으면 출발하여 대문 밖으로 나아간다.
- 주인이 길의 왼쪽에 서서 국궁하고 연이 지나가면 평신한다.
- 상의가 무릎을 끓고 ‘연에 오르실 것’을 계청한다.
- 왕비가 연에 오른다. 모(姆)가 경을 더한다.(경은 대개 명의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길을 갈 때 먼지를 막아 옷을 선명하게 한다.)<sup>42)</sup>
- 궐에 이르러 시위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다.

## 6) 동뢰의

동뢰의는 신랑 신부가 서로 절한 뒤에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다. 5월 13일 친영의를 마치고 궁궐에 들어와 같은 날 신시(申時)<sup>43)</sup>에 저승전(儲承殿)에서 거행하였다. 『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동뢰의의 절차와 그때 쟁용한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시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왕비의 대차를 전하 어전의 합문 밖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 육석을 까는 것은 평상시와 같다
- 저녁이 되면 상침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하의 악차를 어전의 안에 설치한다.
- 지석과 겹으로 된 자리를 폐고 육석 2개를 깐다. 모두 금침이 있다.
- 북쪽의 밭이 닿는 곳에 병장을 설치한다.
- 초저녁에 상식이 주정을 실내에 설치하고 조금 남쪽에 잔근 2개를 그 위에 놓는다.
- 왕비가 궐로 납시어 돈화문에 이른다. 시위하는 것은 평상시의식과 같이 하여 내전의 문 밖에 이른다.(의장은 문 안에 멈춘다.)
- 상침이 산과 선을 받든 자를 거느리고 전등은 촛불을 잡은 사람을 거느리고

42) 『가례도감의궤』에는 세주로 ‘景制如明衣加之以爲行道禦塵令衣鮮明’이라고 씌어 있다. 『세종실록』, 세종 9년 4월 26일(갑신) 친영의에는 【儀禮經傳通解云: “景, 明也。景之制, 蓋如明衣。加之以爲行道禦塵, 令衣鮮明。”】로 기록되어 있다. 또 명의는 첫째, 옛날 사람들이 제례기간 중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입는 정결한 내의(内衣)라고 하였으며, 둘째, 고대 죽은 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입는 정결한 내의라고 했다. 셋째, 신명(神明)의 옷이라고도 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명의는 깨끗한 옷이라는 의미와 함께 원래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경은 명복인 적의 위에 입는 옷을 일컫는다. 다만 그 형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의에 해당하는 명의는 상의하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운 형태로 이해된다.

43)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다.

모두 앞뒤로 죽 들어선다.

- 대차 앞에 이르러 상의가 '부복, 궤하고 연에서 내리실 것'을 계청한다.
- 왕비가 연에서 내리면 상궁이 인도한다. 왕비는 차로 들어가기를 염하고 바르게 한다.
- 마치면 상의가 무릎을 끓고 '차에서 나오실 것'을 계청한다.
- 왕비가 차에서 나오면 상궁이 인도한다. 왕비는 합문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선다.
- 상의가 '부복, 궤하고 외관'을 아뢰면 그대로 좌에서 내려와 예를 갖추어 맞이할 것을 청한다.
- 전하가 좌에서 내려온다.
- 상궁이 무릎을 끓고 '규를 잡으실 것'을 계청하면 여관이 무릎을 끓고 규를 올린다.
- 전하가 규를 잡으면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합내의 동쪽에 서향하여 왕비에게 읍하고 들어가게 한다.(상침이 먼저 육석을 실내에 설치하고 전하가 육석의 동쪽에 서향하고, 왕비는 육석의 서쪽에 동향한다.)
- 전하가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로 올라간다.
-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따라 올라간다.
- 촛불을 켠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의 계단 사이에 들어선다.
- 전하가 왕비에게 읍하고 방에 들어가 곧 자리에서 서향한다.
- 왕비는 자리에서 동향하고 모두 앉는다. 상식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찬을 들고 들어가 전하 및 왕비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 상식 2인이 주정에 이르러 잔을 가져와 술을 따른다. 한 사람은 무릎을 끓고 전하 앞에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을 끓고 왕비 앞에 올린다.
- 상궁이 무릎을 끓고 '규를 풀 것'을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풀다. 여관이 무릎을 끓고 규를 받는다.
- 전하와 왕비가 찬을 받아 제주(祭酒)를 마신다.
- 마치면 상의 2인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 다시 정에 둔다. 상식이 모두 나아가 텅을 올린다.
- 마치면 상식이 또 잔을 가져와 두 번째 술잔을 드린다.
- 전하와 왕비가 찬을 받아 마신다.
- 마치면 상의가 모두 나아가 빈 잔을 받아 다시 정에 둔다.
- 상식이 모두 나아가 텅을 올린다.
- 마치면 세 번째 잔을 드리는데 근을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잔을 드리는 예와 같다.
- 상의가 미땅히 정중앙에 북향하여 부복, 궤하고 예를 마친 후 일어나 시위하는 곳으로 돌아온다.
- 상의가 무릎을 끓고 '규를 잡으실 것'을 계청하면 여관이 무릎을 끓고 규를 올린다.
- 전하가 규를 잡는다.

표1- 의례별 · 신분별 참여자들의 복식

| 신분별        | 의례별           | 납체의<br>4월 13일 | 납징의<br>4월 20일 | 고기의<br>4월 25일 | 책비의<br>5월 2일 | 친영의<br>5월 13일<br>(사시) | 동뢰의<br>5월 13일<br>(신시) |
|------------|---------------|---------------|---------------|---------------|--------------|-----------------------|-----------------------|
| 왕          | 면복            | 원유관,<br>강사포   | 면복            | 원유관,<br>강사포   | 면복           | 면복-상복<br>(개복)         |                       |
| 왕비         |               |               |               | 적의, 수식        |              | 적의 벗음                 |                       |
| 종친문무<br>백관 | 4품<br>이상      | 조복            | 조복            | 조복            | 조복           | 조복                    |                       |
| 종친문무<br>백관 | 5품<br>이하      | 흑단령           | 흑단령           | 흑단령           | 흑단령          | 흑단령                   |                       |
| 정사 · 부사    | 조복-공복<br>(개복) | 조복-공복<br>(개복) | 조복-공복<br>(개복) | 조복            |              |                       |                       |
| 집사관        | 공복            | 공복            | 공복            |               |              |                       |                       |
| 차비관        | 공복            | 공복            | 공복            |               |              |                       |                       |
| 주인         | 공복            | 공복            | 공복            | 조복            | 조복           |                       |                       |
| 주모         |               |               |               |               | 예의           |                       |                       |
| 빈주         | 공복            | 공복            |               | 조복            |              |                       |                       |
| 내시         |               |               |               | 상복<br>(흑단령)   |              |                       |                       |

- 상식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친안을 철수한다.
- 상의가 나아가 정중앙에 북향하여 ‘부복, 케하고 일어나기’를 계청한다.
- 전하와 왕비가 모두 일어난다.
-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동방으로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고 상복(常服)을<sup>44)</sup> 입는다.
-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악에 들어가 적의(翟衣)를 벗는다.
-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 들어간다.
- 왕비의 종자가 전하의 찬을 싸고 전하의 종자가 왕비의 찬을 쌐다.

이상 ‘본의례’에 참여한 의례별 · 신분별 복식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한편 ‘본의례’에 등장하는 참여자들의 복식 기록을 토대로 각 신분별 복식을 시각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표2와 같다.

44) 면복을 벗고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상복은 전하의 시사복(視事服)인 익선관 · 곤룡포이다.

표2-시각자료를 통해 본 의례별·신분별 복식<sup>45)</sup>

|                       |                                       |  |                |
|-----------------------|---------------------------------------|--|----------------|
| 국왕                    |                                       |  |                |
|                       | 면복<br>(납채시, 고기시, 친영시, 동뢰시)            | 원유관, 강사포<br>(납징시, 책비시)                 | 의선관, 곤룡포(동뢰 후) |
| 종친<br>및<br>문무<br>백관   |                                       |  |                |
|                       | 조복(4품 이상): 납채의, 납징의, 고기의,<br>책비의, 친영의 | 흑단령(5품 이하): 납채의, 납징의,<br>고기의, 책비의, 친영의 |                |
| 정사,<br>부사<br>및<br>집사자 |                                       |  |                |
|                       | 조복(납채시, 납징시, 고기시, 친영시)                | 공복(수납채시, 수납징시, 수고기시)                   |                |
| 왕비                    |                                       |  |                |
|                       | 적의, 하피, 적말, 적석(책비시, 친영시, 동뢰시)         |  |                |

45) 시각자료는 숙종 당시의 자료는 아니지만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선정한 자료이다.

### 3. 후속의례

후속의례에는 조현례와 묘현례가 있다. 그러나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아직 묘현례가 행해지지 않을 때이므로 이 가례에서는 조현례만 거행하였다. 왕대비 조현례는 5월 14일 진시(辰時)에 거행하였으며, 대왕 대비전의 조현례는 5월 15일 진시에 거행하였다.

이때 왕비는 명복<sup>46)</sup>을 입고 수식을 더하였으며, 왕대비는 적의를 입고 수식을 더하였다. 대왕대비전의 조현도 왕대비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대왕대비의 복식 역시 적의에 수식을 더한 모습일 것이다.<sup>47)</sup>

## III. 반차도 속 신분별 복식의 특징

『가례도감의궤』는 어람 1건, 예조 1건, 강화부 1건, 태백산 1건, 오대산 1건, 적상산성 1건 등 총 6건이 제작되었다. 현재 어람용은 파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규장각에는 태백산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장서각에는 무주 적상산사고 소장본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차이를 비교하고 앞서 거행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 신분별 복식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왕비가례의 전형이 완성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1. 장서각본 반차도의 특징

먼저 장서각본은 반차도의 면수가 19면으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본은 18면으로 되어 있다. 1면에서 5면까지는 인원수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배치 간격에서 차이를 보이다가 5면에 이르면 두 본이 같아지는 것을

46) 명복(命服)은 중국 주나라에서 천자가 관료의 등급을 9명(命)에서 1명으로 구분하여 하사한 의복을 가리킨다. 조선 역시 중국으로부터 왕·왕비·왕세자는 고명과 명복을 받았으며, 조선의 국왕도 책비 또는 책빈 시 적의와 수식을 고명과 함께 하사하였다. 이때의 복식을 특별히 '명복'이라고 하여 적의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47) 『가례도감의궤』, 조현례, 왕대비전조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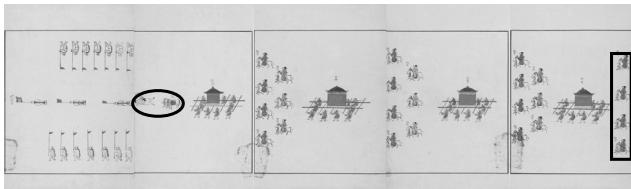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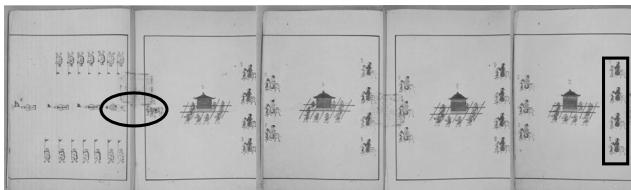


그림1-장서각본 반차도(위) 규장각본 반차도(아래): 1-5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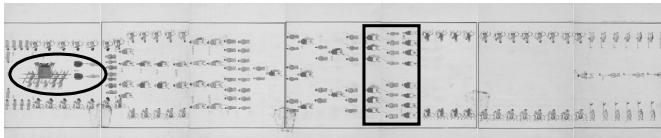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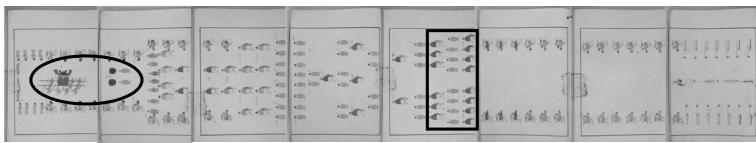


그림2-장서각본 반차도(위): 12-19면, 규장각본 반차도(아래): 12-18면까지

알 수 있다.

다음 6면에서 11면까지는 두 본이 같다. 그러나 이 반차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면에서 또다시 배치 간격이 달라지면서 면수에 차이를 보인다. 장서각본에서는 17면에서 양쪽으로 늘어선 문무백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규장각본에서는 이미 16면에서 금관조복을 입은 문무백관의 모습이 보인다. 다만 장서각본의 17면은 금관조복을 입은 문무백관이 양쪽으로 3명씩 있고 다음으로 흑단령을 입은 문무백관이 양쪽으로 10명씩 시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초관과 포살수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규장각본의 경우에는 금관조복을 입은 문무백관이 양쪽으로 4명씩 있으며, 그 뒤를 흑단령을 입은 문무백관이 8명씩 있다.

두 반차도를 비교해본 결과 연을 메고 가는 연배군의 수가 장서각본은 11명이고 규장각본은 14명이며, 맨 뒤에 호위하고 가는 문무백관의 수가 장서각본은 조복과 흑단령을 입은 사람이 26명인 데 반해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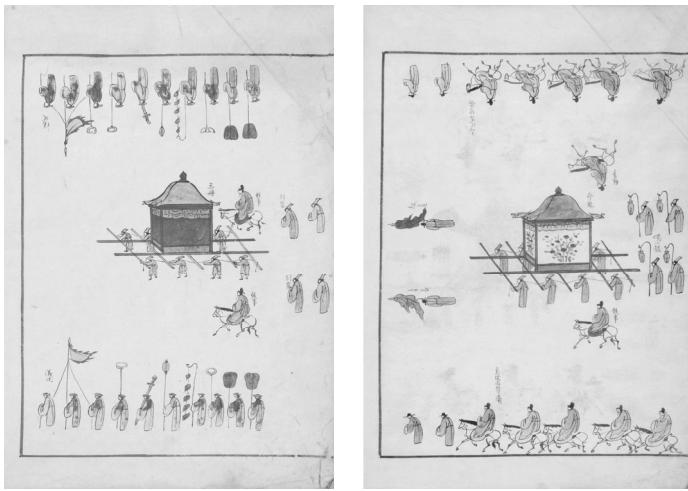


그림3-『(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옥책요여(좌), 명복채여(우)

본은 24명으로 각 역할에 따른 참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참여자는 607명으로 같다.

다음으로 무인년의 반차도와 비교해보면, 반차도의 면수가 8면에서 18면 또는 19면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교명·옥책·금보·명복을 실은 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무인년의 경우에는 교명과 명복은 채여에 싣고 옥책과 보는 요여에 실은 반면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그림1과 같이 모두 요여에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장서각본 반차도 참여자의 역할 및 복식

장서각소장 『가례도감의궤』 「반차도」는 모두 19면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607명이다. 여기에서는 장서각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과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숙종인현왕후 가례의 전범이 된 것이 인조장렬왕후 가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17세기 왕비 가례반차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반차도의 구성은 크게 초관과 포살수 등이 앞에서 호위(扈衛)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명, 옥책, 금보, 명복 등을 담은 요여가 뒤를 따른다.<sup>48)</sup> 이들은 모두 왕비의 권한과 지위를 상징하는 기물들이다.

다음은 백택기를 시작으로 왕비의 노부가 양쪽으로 시위하며, 그 사이를 은우(銀盃), 은관자(銀灌子), 담장(踏障), 은교의(銀交倚)가 뒤를 따른다. 다음은 청개의 의장물 뒤로 장마(仗馬), 내관, 금군(禁軍), 주장내시(朱杖內侍)가 양옆에서 호위한다. 여기에서는 전악(典樂)이 등장하며 그 뒤를 악공(樂工)이 따르는데 연주는 하지 않는다.

그 뒤를 홍양산(紅陽繖)과 지거(支舉)가 따른다. 다음은 왕비의 연이 등장하기 전에 세 겹으로 호위가 이루어진다. 가장 안쪽에는 기행나인, 보행나인, 시녀, 향차비가 있고, 그 옆으로 별감이 있으며, 그 옆으로 주장내시, 나장(羅將), 금환도사(禁喧都事)가 있다. 그 뒤를 연이 따른다. 연의 양옆으로는 내시와 시녀가 호위한다.

왕비의 연을 따르는 것은 청개(青蓋)이며 그 뒤를 내시, 승지(承旨), 사관(史官), 가위장(假衛將), 분도총관, 분도총도사, 분병조당상, 분병조낭청, 사령, 서리, 도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이 뒤를 따른다. 그다음은 문무백관이 양쪽으로 말을 타고 시위하며, 끝으로 초관과 포살수가 호위하는 것으로 반차도의 끝을 알린다.

여기에서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와 비교하면서 각 신분별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호위군의 복식

반차도에 보이는 호위군, 즉 군사들의 복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반차도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포살수(砲殺手)이다. 목판화의 상태가 그다지 치밀하지 않아 구체적인 복색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황, 흥, 청 등의 호의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머리에는 모두 청색의 건을 쓰고 있으나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하급무사의 관모인 전건(戰巾)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관은 흑립에 호수를 꽂고 청색 철력을 입고 있으며, 금군은 립에 철력을 입고 있어 모두 융복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금환도사와 부장의 복식이다. 이들은 사모에 흑단령을 하고 있으며 흑각대를 띠고 있다. 결국 호위군의 복식은 신분에 따라 호의인 군복과 철력을 융복, 흑단령인 상복으로

48) 무인년 가례에는 교명과 명복은 채여에 싣고 옥책과 보는 요여에 실었으나 신유년 숙종인현왕후 가례에는 모두 요여에 싣고 가고 있다.

표3- 호위군의 복식

|                               | 포살수  | 초관                                      | 금군                                      | 금훤도사                                   | 부장                                     |
|-------------------------------|--|---|---|--|--|
| 가례도감<br>의궤<br>반차도             |  |   |   |  |  |
|                               | 청호의, 흥호의, 청건<br>Cheongho-ee, Hongho-ee, Cheong-geon              | 청철리,<br>흑립<br>Cheongchil-ri,<br>Hyeolip | 청철리,<br>흑립<br>Cheongchil-ri,<br>Hyeolip | 흑단령,<br>사모<br>Heukdan-ryeong,<br>Sa-mo | 흑단령,<br>사모<br>Heukdan-ryeong,<br>Sa-mo |
| (인조장렬<br>왕후)가례<br>도감의궤<br>반차도 |  |   |   |  |  |
|                               | 흥호의, 황호의, 백호의, 전건<br>Hongho-ee, Hwangho-ee, Baekho-ee, Jeon-geon | 청철리,<br>흑립<br>Cheongchil-ri,<br>Hyeolip |   | 흑단령,<br>사모<br>Heukdan-ryeong,<br>Sa-mo | 흑단령,<br>사모<br>Heukdan-ryeong,<br>Sa-mo |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배군과 의장군의 복식

교명, 옥책, 금보, 연을 끼고 가는 연배군(輦陪軍)은 모두 자의(紫衣)에 자목두건(紫木頭巾)을 쓰고 있으며, 의장군(儀仗軍)은 자의에 흥피립(紅皮笠)을 쓰고 있다. 이들의 복식은 『가례도감의궤』 「2방 의궤」에 수록해놓은 “연배군, 의장군 등의 복식은 등록에 의해 마련하고 후록(後錄)해놓았다”는 기록을 통해 의견 · 피립 · 온혜 · 학창임을 알 수 있다.<sup>49)</sup> 다만 복색은 반차도를 통해 연배군은 흥의에 흥건을 착용하고, 의장군은 자의 또는 청의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례도감의궤』 「왕비자별궁예궐반차도(王妃自別宮詣闕班次圖)」에는 흥목의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과 그림에서는 각 신분에 따라 복색에 차이가 있어 연배군은 흥의에 흥건을 쓰고 있으며, 의장군은 자의에 피립을 쓴 경우와 청의에 청건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의를 입었을 때에는

49)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二房儀軌, 輦陪軍四十名所着紫木衣四十件 […], 儀仗軍五十七名所着衣服五十七件內, 紅衣四十件, 青衣十三件, 紫衣四十件, 皮笠五十件青頭巾三件…….

표4-연배군과 의장군의 복식

|                               | 연배군    | 의장군 1   | 의장군 2  | 의장군 3  | 의장군 4  |
|-------------------------------|--------|---------|--------|--------|--------|
| 가례도감<br>의궤<br>반차도             |        |         |        |        |        |
|                               | 홍의, 홍건 | 홍의, 홍피립 | 청의, 청건 | 청의, 청건 | 청의, 청건 |
| (인조장렬<br>왕후)가례<br>도감의궤<br>반차도 |        |         |        |        |        |
|                               | 홍의, 홍건 | 청의, 홍피립 | 청의, 피립 |        |        |

의의 길이가 길게 표현된 경우도 있으나 규장각본에서는 청의를 짧게 또는 길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길이에 상관없이 '청의'로 볼 수 있다(표4).

### 3) 도제조 이하 제집사자의 복식

반차도에 등장하는 도제조 이하 제집사의 복식은 크게 금관조복, 공복, 흑단령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의 복식은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구분되는데,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 및 4품 이상의 문무백관은 조복을, 집사는 홍단령인 공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 외에 내관, 5품 이하의 문무백관은 흑단령을 입고 있다.

집사들의 공복에 대한 논의는 『왕비가례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례도감의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채, 납정, 고기 등 행례 시 정·부사 이하 제집사 및 주인, 빙자는 모두 공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도감에 명령하여 조비할 것을 예조에서 절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가져다 고찰한즉 무인년 가례에는 다만 정·부사와 주인, 빙자만 공복을 착용하고 그 나머지 제집사는 모두 흑단령으로 행례를 하였으며, 신묘년과 신해년 책빈 가례 때에는 품한 것을 고쳐 모두 이에 의거하여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가례 때에는 모두 무인년 예에 의거하여 행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전 등록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이미 해조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냈습니다. 멋대로 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히 여쭙습니다.<sup>50)</sup>

표5- 도제조 이하 제집사의 복식

|                               | 도제조-<br>감조관 | 내관      | 집사      | 4품 이상<br>문무백관 | 5품 이하<br>문무백관 |
|-------------------------------|-------------|---------|---------|---------------|---------------|
| 가례도감<br>의궤<br>반차도             |             |         |         |               |               |
|                               | 금관조복        | 사모, 흑단령 | 복두, 홍단령 | 금관조복          | 사모, 흑단령       |
| (인조장렬<br>왕후)가례<br>도감의궤<br>반차도 |             |         |         |               |               |
|                               | 사모, 흑단령     | 사모, 흑단령 | 사모, 흑단령 |               |               |

이에 따르면 정사와 부사, 주인과 빈자만 조복을 입고 그 나머지 집사자는 모두 흑단령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보면 집사들이 모두 공복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인년의 예와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미 공복을 장만했기 때문에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도제조 이하 제집사의 복식은 인조장렬왕후가례에서는 흑단령 한 가지 복식만 보였던 것에 비해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금관조복뿐 아니라 홍단령인 공복, 흑단령인 상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신분에 따른 복식이 보다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표5).

#### 4) 사령, 서리, 나장, 별감 등의 복식

사령, 서리, 나장, 별감은 모두 하급관리이다. 이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질서 정연하게 행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사령과 서리는 도제조 이하 관원들을 앞에서 인도하며, 나장과 별감은 왕비의 연을 호위한다. 역대 가례반차도에서는 사령은 철력을 입고 서리는 청단령을 입고 있으나 이 반차도에서는 사령과 서리의 복색에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사령은 장(杖)을 들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뒷모습만

50) 『왕비가례등록』, 집사흑단령행례.

표6-사령, 서리, 별감, 나장의 복식

|                           | 사령      | 서리      | 별감                | 나장     |
|---------------------------|---------|---------|-------------------|--------|
| 가례도감<br>의궤<br>반차도         |         |         |                   |        |
|                           | 흑립, 청철릭 | 흑립, 청단령 | 홍건, 녹단령, 자단령, 청단령 | 고깔, 빈비 |
| (인조장렬왕후)가례<br>도감의궤<br>반차도 |         |         |                   |        |
|                           | 흑립, 청단령 | 흑립, 청단령 | 자간, 청단령           |        |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령은 흑립에 청철릭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리는 흑립에 청단령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별감의 복식은 크게 녹색, 자색, 청색의 단령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모두 홍두건을 쓰고 있다. 소매와 단령의 길이가 매우 길며 건은 모두 홍색 일색인 것에 비해 의는 녹색, 홍색, 청색 등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다. 인조장렬왕후 가례와 비교했을 때 복식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숙종인현왕후 가례에는 나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식은 깔때기 모양의 쇠가래를 쓰고 의(衣) 위에 흑색 호의를 입고 주장을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조장렬왕후 가례와 비교하여 소매의 길이와 통이 좁아졌으며, 보다 다양한 신분이 등장하고 있다(표6).

### 5) 시녀, 의녀, 기행나인, 보행나인, 향차비의 복식

반차도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시녀, 의녀, 기행나인, 보행나인, 향차비 등이다. 이들은 모두 왕비의 연 앞과 옆에서 걷거나 말을 타고 엄중하게 시위하는 인물들이다.

『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기록되어 있는 기행나인의 복식은 홍장삼과 황장삼을 입고 너울을 쓴다고 하였다.<sup>51)</sup> 그러나 실제 반차도에는 너울의

51)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奇行內人四人衣服, 紅長衫二, 黃長衫二, 汝火

표7-기행나인, 보행나인, 시녀, 의녀, 향차비의 복식

|                               | 기행나인                                 | 보행나인                              | 시녀                             | 의녀                  | 향차비 |
|-------------------------------|--------------------------------------|-----------------------------------|--------------------------------|---------------------|-----|
| 가례도감<br>의궤<br>반차도             |                                      |                                   |                                |                     |     |
| 청상립, 흥장삼,<br>황장삼              | 가리마, 아청색<br>저고리, 황색<br>치마, 초록색<br>치마 | 너울, 아청색<br>저고리, 초록색<br>저고리, 황색 치마 | 전모,<br>초록색<br>저고리,<br>황색 치마    | 청색<br>저고리,<br>황색 치마 |     |
| (인조장렬<br>왕후)가례<br>도감의궤<br>반차도 |                                      |                                   |                                |                     |     |
|                               |                                      |                                   | 너울, 아청색<br>저고리, 초록색<br>저고리, 말군 |                     |     |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청상립을 쓰고 있다. 보행나인은 청색 저고리를 입고, 치마는 황색 또는 초록색을 입고 있다. 시녀는 모두 너울을 쓰고 아청색과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황색 치마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인조장렬 왕후 가례와 비교해볼 때 시녀는 너울을 쓰고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상궁은 아청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말군을 입고 있어 시녀 복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녀는 청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를 입고 전모를 쓰고 있다. 향차비 역시 청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를 입었으며, 특별한 쓰개는 보이지 않고 가체를 이용한 조짐머리를 하고 있다(표7).

## 6) 전악, 악공의 복식

왕비의 연을 이끄는 의장물 중 가장 큰 특징은 악대의 편성으로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실제 연주는 하지 않고 진열만 하기 때문에 진이부작(陳而不作)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악과 악공으로 구성된다. 전악의 복식은 녹단령 복두를, 악공은 홍단령에 복두를 쓰고 있다(표8).

四, 袜裙四, 衫兒四, 帶四, 赤尗四, 袖赤古里四, 赤尗四, 凉耳掩四

표8-전악과 악공의 복식

|               | 전악  | 악공  |
|---------------|---|---|
| 가례도감의궤<br>반차도 |  |  |

#### IV. 맷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에 수록된 의례별·신분별 복식을 중심으로 숙종 인현왕후 가례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가례는 무인년에 거행된 인조장렬왕후 가례에 이어 40년 만에 치러진 국왕의 가례로 이전의 가례와는 달리 의식 절차와 복식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무인년 가례와는 달리 19면에 이르는 긴 반차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의장의 성대함은 17세기 왕비가례의 전형을 완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을 통해 절차에 따라 등장하는 왕을 비롯한 왕비, 종친 및 문무백관, 주인, 주모, 정사·부사 및 집사관 등의 복식 기록과 함께 친영을 끝내고 동뢰의를 치르기 위해 별궁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행렬을 그린 반차도를 통해 각 신분별 복식을 살펴봄으로써 왕비가례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전체적인 복식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19면에 이르는 숙종인현왕후 가례 반차도는 무인년에 거행된 8면의 인조장렬왕후 가례 반차도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숙종인현왕후 가례복식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례의 절차에 따른 국왕의 복식은 크게 역할에 따라 주재자로서의 복식과 주인공으로서의 복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가례 주재자로서 납채의·고기의에는 면복을 입었으며, 납징의와 채비의에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었다. 다음 주인공으로서 친영의와 동뢰의를 치를 때에는 면복을 입었으며, 동뢰의를 마친 후에는 면복을 벗고 곤룡포인 상복을

입었다.

둘째, 육례의 절차에 따른 왕비의 복식을 보면 왕비가 등장하는 의례는 책비의와 친영의, 동뢰의이다. 이때에는 모두 왕비 신분으로서의 명복인 적의를 입고 수식을 더하였다.

셋째, 국왕과 왕비를 제외하고 실제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가례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종친과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실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정사와 부사, 왕의 명령을 받는 주인과 빈자 및 집사관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종친과 문무백관들의 복식을 보면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그중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전하러 가는 정사와 부사는 대궐 밖으로 나가 공복으로 갈아입고 의례를 거행했다. 특히 이 가례에서는 왕비의 집이 아닌 어의동에 있는 홍정승 중보의 집을 별궁으로 삼고 그곳에서 수납채의, 수납징의, 수고기의를 거행하였으며, 정사·부사를 비롯해 주인과 빈자의 복식은 모두 도감에서 마련하였다.

넷째, 반차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도제조 이하 감조관 까지 각 인물들의 복식이다. 이들은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상복인 흑단령을 입고 있었으나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모두 금관조복을 입고 있으며, 집사들의 복식 또한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흑단령을 입고 있었으나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공복인 홍단령을 입고 있다. 이는 왕비가례의 성대함과 위의를 드러내기 위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반차도의 면수가 증가한 것은 호위군과 의장군, 연배군 등은 물론 전악과 악공을 비롯하여 시녀, 의녀, 기행나인, 보행나인, 향차비 등 여성 참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호위군은 크게 초관, 포살수, 금군 등으로 융복을 입고 있으며, 교명, 옥책, 금보, 명복을 메고 가는 연배군들은 각각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의와 건 또는 피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복식 또한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장삼과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청상립을 비롯하여 너울, 가리마 및 조짐머리 등 다양한 쓰개류와 머리형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복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색이 화려해진 것은 왕비의 위의(威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 한몫을 했을 뿐 아니라 17세기 왕비가례의 전형이 완성되는 기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세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왕비가례등록』, 『가례도감의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국조오례의』.

### 2. 단행본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심동신 조복, 1997.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3. 논문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흔례의 추이와 특성: 숙종, 인현왕후 가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권, 조선시대사학회, 2007.

윤혜민, 「조선 전기 계비 선정 방식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 조선시대사학회, 2013.

이미선,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 고찰: 장서각 소장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장서각』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임민혁, 「조선시대 『등록』을 통해 본 왕비의 친영과 권위」. 『한국사학사학보』 25, 2011.

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2008.

\_\_\_\_\_,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별궁 친영례”的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 국 문 초 록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와 『(인현왕후)왕비가례등록』에 수록된 각 의례별·신분별 복식을 중심으로 숙종인현왕후 가례 복식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숙종인현왕후는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다. 숙종은 1671년(현종 12) 왕세자 신분으로 첫 번째 가례를 치렀으며, 인현왕후와는 1681년(숙종 7) 두 번째 가례를 치렀다. 이 가례는 왕세자 시절 치른 첫 번째 가례와는 달리 국왕의 신분으로 치른 첫 번째 가례이며, 17세기 왕비가례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례도감의궤』와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숙종인현왕후 가례 시 의례별·신분별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례의 절차에 따른 국왕의 복식은 크게 역할에 따라 주재자로서의 복식과 주인공으로서의 복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가례 주재자로서 납채의·고기의에는 면복을 입었으며, 납정의와 책비의에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었다. 다음 주인공으로서 친영의와 동뢰의를 치를 때에는 면복을 입었으며, 동뢰의를 마친 후에는 면복을 벗고 곤룡포인 상복을 입었다.

둘째, 육례의 절차에 따른 왕비의 복식을 보면 왕비가 등장하는 의례는 책비의와 친영의, 동뢰의이다. 이때에는 모두 왕비 신분으로서의 명복인 적의를 입고 수식을 더하였다.

셋째, 국왕과 왕비를 제외하고 실제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가례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종친과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실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정사와 부사, 왕의 명령을 받는 주인과 빈자 및 집사관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종친과 문무백관들의 복식을 보면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는다. 그중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전하러 가는 정사와 부사는 대궐 밖으로 나가 공복으로 갈아입고 의례를 거행했다. 특히 이 가례에서는 왕비의 집이 아닌 어의동에 있는 홍정승 중보의 집을 별궁으로 삼고 그곳에서 수납채의, 수납정의,

수고기의를 거행하였으며, 정사·부사를 비롯해 주인과 빈자의 복식은 모두 도감에서 마련하였다.

넷째, 반차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신분별 복식은 도제조 이하 감조관 까지 각 인물들의 복식이다. 이들은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상복인 흑단령을 입고 있었으나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모두 금관조복을 입고 있으며, 집사들의 복식 또한 인조장렬왕후 가례에서는 흑단령을 입고 있었으나 숙종인현왕후 가례에서는 공복인 홍단령을 입고 있다. 이는 왕비가례의 성대함과 위의를 드러내기 위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반차도의 면수가 증가한 것은 호위군과 의장군, 연배군 등은 물론 전악과 악공을 비롯하여 시녀, 의녀, 기행나인, 보행나인, 향차비 등 여성 참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호위군은 크게 초관, 포살수, 금군 등으로 융복을 입고 있으며, 교명, 옥책, 금보, 명복을 매고 가는 연배군들은 각각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의와 건 또는 피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복식 또한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장삼과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청상립을 비롯하여 너울, 가리마 및 조짐머리 등 다양한 쓰개류와 머리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복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색이 화려해진 것은 왕비의 위의(威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 한몫을 했을 뿐 아니라 17세기 왕비가례의 전형이 완성되는 기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투고일** 2016. 12. 22.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가례(Garye), 등록(Deungrok), 반차도(Bancha-do), 숙종인현왕후(Sukjong-Inhyunwanghu), 삼간택(Samgantaek), 별궁(Byeolgung), 친영(Chinyeong), 의례복식(Ceremony-Costume)

## Abstracts

###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ukjong-Inhyunwanghu-Garye Costumes through the Costumes: Focused on *Garyedogam uigwe* and *Wangbigaryedeungrok*

Lee, Mi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arye(wedding ceremony) costumes based on the ceremonia Costume described and illustrated in *Garyedogamuigwe* and *Wangbigaryedeungrok* currently housed at the Jangseogak Archiv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ukjong had his first garye as the crown prince in 1671(12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and second garye as the king in 1681(7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garye are examined based on the garye of King Sukjong and Queen Inhyun(the second marriage), which is considered to have presented the complete model of a garye of the queen in the 17th century.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eremonial costumes of the king differed from his roles followed by Yuknye(6 procedures of marriage), The king wore his Myunbok for Napchae and Gogi. For Napjing and Chaekbi rites, he wore wonyugwan crown and gangsapo. As the protagonist of his marriage, the king wore Myunbok for Chinyeong and Dongnoe. After the Dongnoe rite was finished, the king changed his royal robe from Myunbok to Gonnyongpo.

Second, in the case of the ceremonial costumes of the queen for Yuknye, she wore Jeogui (red clothes) and Susik (headpieces) in all of the rites in which she participated, which were Chaekbi, Chinyeong and Dongnoe.

Third, the individuals present at the rites, excluding the king and the queen, were the royal clan, Munmubaekgwan, and the master of household-Jeongsa, Busa, Jipsagwan, binja. The royal clan and Munmubaekgwan above fourth rank wore jobok for the rites while those below the fifth rank wore Heukdannyeong. However Jeongsa and Busa who deliver the sentences of the king, change their clothes into Gongbok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Especially at this garye, the bride held the Sunapchae, Sunapjing and Sugogi rites at the home of minister Hong instead of her house. Meanwhile, the costumes of Jeonsa, Busa, the master of the household and Binja were all prepared by the Dogam.

Fourth, the ceremonial costumes that show the biggest changes over time are those of the Dojejo to Gangiogwan. They wore Geumgwanjobok in the garye of King Sukjong and Queen Inhyeon, but they had worn Heukdannyeong, which was a Sangbok, in the garye of King Injo and Queen Jangnyeol. Also, as for the Jipsas, they wore Hongdannyeong, which was a Gongbok, in the garye of King Sukjong, but they had worn Heukdannyeong in the garye of King Injo. It is believed that the objective was to demonstrate and reaffirm

the solemnity of the rites through the ceremonial costumes of the participants.

Fifth, the pages of banchado had highly increased at the garye of King Sukjong and Queen Inhyeon. It is mainly due to the increase of female participants, Simyeo(maid), Uinyeo, Nain and Hyangchabi along the magnificence of the rites demonstrated through the Howigun, Uijanggun and Yeonbaegun escorting and guarding the queen's palanquin. The Howigun consisted of Chogwan, Posalsu and Geumgun wearing Yungbok, while Uijangsus carried baektaekgi in front of the palanquin carrying the queen. On the other hand, the Yeonbaegun carried the Gyomyeong, Okchaek, Geumbo and Myeongbok symbolizing the status of the Queen. The female participants' costumes were different by their roles and status. The costumes were Jangsam, Chima, Jeogori and various hair accessories—Cheongsanglib, Neoul, Garima and Jojimhair—were worn. Ceremonial Costumes became various and fancy according to the roles and status of the rite participants.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the demonstration of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queen and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the garye of the Queen in 17th century.